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국가범죄를 범한 경우 급여수급권 박탈 요건을
퇴직 후의 사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등〉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71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13호)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14호)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81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51호)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9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개 요	1
【추미애의원안】	1
【서영교의원안】	3
【신영대의원안】	4
【김영환의원안】	6
【문금주의원안】	7
【백혜련의원안】	9
II. 검토의견	11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1
2. 검토의견	20

I. 개 요

【추미애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추미애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16.

다. 회부연월일 : 2025. 1.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검찰로 퇴직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서영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17.

다. 회부연월일 : 2025. 1.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 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신영대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영대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17.

다. 회부연월일 : 2025. 1.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김영환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환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23.

다. 회부연월일 : 2025. 1.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음.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문금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13.

다. 회부연월일 : 2025. 2.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재직 중 국방·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에는 공무원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제6항).

【백혜련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17.

다. 회부연월일 : 2025.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재직 중의 사유뿐

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불고지죄 제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급여 제한의 요건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지 않고 퇴직 후의 사유에 까지 확대하여 퇴직 후 이들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서영교의원안 및 신영대의원안은 기수급한 퇴직급여 등 급여를 환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문금주의원안 및 백혜련의원안은 퇴직급여를 기수급한 경우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기여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형사기소된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추미애의원안·서영교의원안·신영대의원안·김영환의원안·백혜련의원안 제65조제4항, 문금주의원안 제6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 행	추미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신영대의원안	김영환의원안	문금주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현 행	추미애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김영환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략)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u>경우에는</u> 이	④ 「 <u>형법</u> 」 제2편 제1장-----	④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의 사유로 <u>형법</u> 」 제2편 제1장-----	④ 이 법에 따라 퇴직 급여의 수급 자격이 있거나 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 <u>형법</u> 」 제2편 제1장-----	④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 <u>형법</u> 」 제2편 제1장-----	④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 <u>형법</u> 」 제2편 제1장-----
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 경우 에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형이 확정 되기 전까 지 수급한 퇴직 급여				

현 행	추미애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김영환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하되 급여 는 지급하 지 아니한 다. <후단 /단서 신 설>		(연금인 급 여를 제외 한다)와 퇴 직 수당을 전액 반환 하여야 하 며, --- 날 부한 ----- ----- ----- - 반환하고 ----- ----- -----.	----- ----- ----- ----- ----- ----- ----- 이 경우 이 미 수급한 급여나 수 당에 대해 서는 반환 조치 한다.	---.		----- ----- ----- ----- ----- ----- ----- 다만, 퇴직 급여를 이 미 지급받 은 경우에 는 지급받 은 금액 중 이미 낸 기 여금의 총 액에서 지 급받은 기 여금을 제 외한 나머 지 기여금 에 「민 법」 제379 조에 따른 이자를 가 산한 금액 을 반환한 다. -----
<신 설>	-	-	-	-	⑤ 공무원 이었던 사 람이 퇴직 후의 사유 로 「형 법」 제2편 제1장(내란 의 죄)·제 2장(외환의 죄), 「균형 법」 제2편	-

현행	추미애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김영환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제1장(반란 의 죄)·제 2장[이적(利 敵)의 죄]에 규정된 죄 를 범하여 금고 이상 의 형이 확 정된 경우 에는 이미 낸 기여금 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를 가산한 금액을 반 환하되, 급 여는 지급 하지 아니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 받은 경우 에는 지급 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 머지 기여 금에 「민 법」 제379 조에 따른 이자를 가	

현 행	추미애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김영환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신 설>	-	-	-	-	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⑥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범죄 행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공단의 임직원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현행과 같음)

현 행	추미애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김영환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은 「형 법」 제12 9 조 부 터 <u>제132조까 지의 규정</u> 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 원 으 로 본다.				----- ----- ----- <u>제132조까 지를</u> ---- ----- -----.		
제45조(분할 연금 수 급 권 자 등) ① ~ ③ (생 략)	제45조(분 할 연금 수급 권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제45조(분 할 연금 수급 권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제45조(분 할 연금 수급 권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제45조(분 할 연금 수급 권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제45조(분 할 연금 수급 권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제45조(분 할 연금 수급 권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제1항 부터 <u>제3 항까지의 규정에</u> 따 른 분할연 금의 청 구, 혼인 기간의 인 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 령 으 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 ----- <u>제3 항까지에</u>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분할 연금 청 구의 특 례 등) ① ~ ④ (생 략)	제48조(분 할 연금 청구 의 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분 할 연금 청구 의 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분 할 연금 청구 의 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분 할 연금 청구 의 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분 할 연금 청구 의 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분 할 연금 청구 의 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부터 <u>제3</u>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⑤ ----- ----- <u>제3</u>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추미애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김영환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분할연 금 신청구 와 그 취 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 다. 제73조(퇴직 수당부담 금) ① (생 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퇴 직수당부 담금을 공 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 수당부담 금의 징수 등에 관하 여는 제71 조제2항부 터 제7항 까지의 규 정을 준용 한다. 다 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 가나 지방	제73조(퇴직 수당부담 금) ① (현 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퇴직 수당부담 금) ① (현 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퇴직 수당부담 금) ① (현 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항까지에 - ----- ----- ----- ----- ----- ----- ----- --. 제73조(퇴직 수당부담 금)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 ----- ----- ----- ----- ----- ----- 제7항 까지를 -- -----.	제73조(퇴직 수당부담 금) ① (현 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퇴직 수당부담 금) ① (현 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현 행	추미애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김영환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 는 공무원 으로 본 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 --- 제132 조까지를 - ----- ----- ----- ---.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불고지죄를 제외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이하 “반국가범죄”라 함)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들은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급여 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의 사유”로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제재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¹⁾²⁾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제한의 요건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된 것은 2009.12.31.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 법률 개정 전에는 그 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
- 1) 문금주의원안은 안 제65조제5항에서 현행 제65조제4항과 달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제외하고 있는데, 퇴직 후의 사유인 경우 동 범죄를 급여수급권 박탈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인지 명확한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문금주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반국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급 정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재직 중의 사유”로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당시 해당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사유”에까지 적용하여 급여를 제한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02.7.18.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후 동 급여 제한의 요건을 현행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

상기 위헌소원 사건에서 퇴직 후에 범한 반국가범죄를 급여 제한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시된 찬반 논거를 살펴보면,

이를 찬성하는 논거로는, 1) 공무원은 퇴직 후라도 반국가적 활동에 나설 경우 국가의 안위에 훨씬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국가적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직 시기를 불문하고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사회보장 혹은 공로보상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특수성, 범죄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퇴직 후에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당사자가 부담하였던 기여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3) 급여의 제한에 있어 개인에 대한 살인이나 공금의 횡령 등은 국가 전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닌 반면 내란이나 외환 등의 범 죄는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바,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급여의 제한과 일반 사범에 대한 급여의 제한에 차별을 두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반면, 헌법재판소는 퇴직 후에 범한 반국가범죄를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³⁾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 바,⁴⁾

3) [헌법재판소 2002.7.18.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위헌소원 사건]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범할 때에 국가에 대한 위해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퇴직 후에도 그 위험성이 같은 정도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적정성을 결하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어 법익균형성을 잃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4) [헌법재판소 2002.7.18.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위헌소원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여 보는 입장을 취할 경우, 공무원 재직 중에 일반범죄를 범한 자와 재직 중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자 사이에는 제한되는 급여의 범위에 다음과 같은 차등이 있다. … 이러한 차별은 공무원이 재직 중 반국가적 범죄를

그 논거로는, 1)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의무(성실의무 등)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 부과되는 의무로서 퇴직한 후에도 이를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 수급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에도 계속 재직 시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고,

2) 공무원이 반국가범죄를 범할 때에 국가에 대한 위해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퇴직 후에도 그 위험성이 같은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때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위해가 클 개연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차이는 퇴직급여수급권을 제한 내지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법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과 그 근무기간 등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및 국민의 안녕에 미치는 정도를 구분함이 없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범할 경우 국가에 대한 위해가 일반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큰 차별이 있게 된다. 퇴직 후 일반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급여청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의 퇴직 후에 범한 반국가적 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의 급여청구권을 퇴직 후의 사유에 기하여 일률적으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4) 퇴직 후 일반 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급여청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박탈하게 되어 큰 차별이 있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상기 위헌소원 사건에서 제시된 찬반 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동 사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들이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아울러,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부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추미애의원안은 현행법상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급여 제한이 적용되는 요건 중 “재직 중의 사유”일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고, 신영대의원안·김영환의원안 및 백혜련의원안은 현행법상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급여 제한이 적용되는 요건 중 “재직 중의 사유” 일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 “퇴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거나 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상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재직 중의 사유”만인지 “퇴직 후의 사유”도 해당하는지 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들 개정안의 경우 상기 위헌결정 대상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급여 제한 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⁵⁾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적용상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입법적 의도가 법문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서영교의원안 및 신영대의원안은 기수급한 퇴직급여 등 급여와 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문금주의원안 및 백혜련의원안은 퇴직급여를 기지급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기

5) 신영대의원안 및 김영환의원안의 경우 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상기 위헌결정 대상 법률 조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여금을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급여수급권 박탈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기수급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 급여를 환수하는 것을 전제하고 당사자로부터 환수받아야 할 급여 기지급분에서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기여금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있음.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서영교의원안 및 신영대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환수 근거를 명시하거나 문금주의원안 제65조제5항 단서 및 백혜련의원안 제65조제4항 단서와 같이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 방식을 별도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입법적 실익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형벌 등에 따른 급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연금 급여 제한을 퇴직 후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